

2021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『안전투자 혁신사업』 모집 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□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('09.9.30.까지)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*을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 (20.12.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
*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, ①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, ②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·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(재활용 처리 크레인), ③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

-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('09.6.30.까지)에 출고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*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 (20.12.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
*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, ①테일 리프트(tail lift), ②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③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, ④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장비, ⑤농업용 고소작업차(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)

-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동력으로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
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

□ 지원분야 및 규모

- (이동식기계 교체)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
 - ▲이동식크레인 및 ▲고소작업대 교체 지원

| 지원 분야 | 지원 조건 | 지원 한도 | 가격 산정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동식크레인 |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(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) | 교체 비용의 50% (1억원 한도) | 시장가격(위험기계+옵션)을 적용하여 산정 |
| 고소작업대 | | | |

※ 교체 대상 위험기계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하며 교체 용량 제한 없음

- 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리스 또는 할부 중에서 선택

* 공단 등록 금융사 재정 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

- (설비공사)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▲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위험 공정에 대한 개선 및 ▲리프트 교체 지원

| 지원 분야 | 지원 한도 | 가격 산정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뿌리공정개선 | 사업비*의 50% (1억원 한도) *장비구매·설치,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, 해체비 등 포함 | 공단 원가계산 결과를 적용하여 산정 |
| 리프트교체 | | |

※ 뿌리공정개선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이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장비(적재대, 공구대, 작업대 등) 등일 경우 지원 불가

- 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리스,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

3. 선정절차 및 방법



□ 사업 대상 선정방법

- (평가대상 사업장 선정)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「평가대상」 사업장을 선정 (지원 가능 사업장의 약 110% 규모)

| 【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】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구분 | 우선순위 항목 |
| 이동식기계 교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험기계 제작 연식, 교체 범위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 *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기계 제작 연식 * 위험기계 소유기간 (장기 보유자 우선) |
| 설비공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업종, 위험수준,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 * 3대 뿌리업종(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) 여부, 뿌리공정 보유 여부 등 * 사업장 규모(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 * 공정 노후도 및 위험 공정 보유 수준 |

- (대상선정 평가)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▲재정평가, ▲현장평가, ▲원가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
 - * 재정평가 : 리스, 할부 등 금융지원 가능 여부 및 적용 금리 평가
 - * 원가평가 : 신청한 설비공사 금액의 적정여부 평가(이동식기계 교체의 경우 제외)

< 이동식기계 교체 적정성 현장 평가 >

- ▶ (방법) 전국 32개 안전검사장 안전검사 위탁기관 중 적정성 평가를 위탁하여 교체대상 이동식기계의 적정성 평가
- ▶ (항목) ▲차량등록원부 상 차대번호 일치여부, ▲차량 소유자, ▲보유기간 및 ▲세금 체납여부 등 확인

< 설비공사 적정성 현장평가 >

- ▶ (방법) 신청 사업장에 방문, 개선대상 공정 확인 및 CEO 면담 등을 통해 평가
- ▶ (항목) 개선에 따른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, 생산성 개선 정도, 사업 완수 가능성, 개발 일정의 타당성 등(100점 만점)
 - * 전체 배점 중 60점 이상은 심사 상정, 60점 미만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, 2회 이상 60점 미만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등 반려 조치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이동식기계 교체 : '21. 2. 1.(월) ~ 2. 28.(일) 18:00까지
- 설비공사 : '21. 3. 22.(월) ~ 4. 30.(금) 18:00까지(예정)
※ 사업참여 신청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예정

□ 신청방법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anto.kosha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- 신청서류

<필수 제출 신청서류>

- ▶ 사업자등록증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
- ▶ 산재완납증명원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
- ▶ 사업계획서 2부(원본대조필 1부, 사본 1부, 설비공사에 한함)
- ▶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1부(사본, 이동식기계 교체에 한함)
- ▶ 견적서 1부(사본)
- ▶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
- ▶ 정보 활용 동의서(원본)

□ 문의처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 1644-4555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anto.kosha.or.kr) Q&A 게시판

5. 지원제외 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- ▶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
6. 기타 사항

- 상기 사업단계별 추진 일정은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